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46 발의연월일: 2022. 12. 21.

발 의 자:정점식・박형수・서정숙

이종성 • 임이자 • 장동혁

전주혜 · 정희용 · 조정훈
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,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·처리가 가능하나,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.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,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

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 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"여권·선원신분증명서·외국인입국허가서·외국인등록증"을 "여권·선원신분증명서·외국인입국허가서·외국인등록증(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 제3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추가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(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 국인등록증을 말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모발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대상, 절차, 규격, 유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33조의3제3호 중 "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"을 "외국인 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"를 "외국인등록증 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"로, "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"를 "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"로 한다.

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 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 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88조의2제1항 중 "외국인등록증"을 "외국인등록증(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, 사진,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27조(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) 제27조(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)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② ----인은 항상 여권·선원신분증명 ---- 여권·선원신분증명서 서 · 외국인입국허가서 · 외국인 | ·외국인입국허가서 ·외국인등 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(이하 록증(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 "여권등"이라 한다)를 지니고 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) -있어야 한다. 다만, 17세 미만 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) 제33조(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) ① ~ ⑤ (생 략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<신 설>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추 가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 증(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 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 증을 말한다)을 발급할 수 있 다. ⑦ 제6항에 따른 모발일외국인 <신 설> 등록증의 발급 대상, 절차, 규 격,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제33조의3(외국인등록증 등의 채 제33조의3(외국인등록증 등의 채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2. (생략)
-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
- 4.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4. ----- 외국인등록증이 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ㅣ 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 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 는 행위

5. (생략)

제36조(체류지 변경의 신고) ① 제36조(체류지 변경의 신고) ① ~ (7) (생 략)

는 업무무성으로 생만되	은	법무부령으로	정한다.
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

-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 인등록증 및 모바일국내거소신 고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- 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 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 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지) 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3.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 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
 - 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 정하게 사용하거나 -----의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 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 한다-----
 - 5. (현행과 같음) ~ (7)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88조의2(외국인등록증 등과 주 제88조의2(외국인등록증 등과 주 민등록증 등의 관계) ① 법령 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 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 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 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 하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 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| 제12조의2 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 할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 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 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 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 다.

민등록증 등의 관계) ① ----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 - 외국인등록증(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을 포함한다)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, 사진,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 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

<u>있다.</u>